

실험실 화학약품 안전관리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원(이하“본원”이라 한다)의 실험실 및 작업장(이하 “실험실”이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및 본원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“유해화학물질”이라 함은 본원에서 실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.

②“폐기물”이라 함은 실험 시 발생하는 폐산, 폐알칼리, 폐유,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 또는 실험동물의 사체, 적출물, 탈지면,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을 말한다.

③이하 본 지침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(이하“관계법령”이라 한다)을 준용한다.

제4조(업무분담)①본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련 업무는 안전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②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 관련 업무는 생물과학과에서 담당한다.

③유해화학물질과 관련없는 일반폐기물 관련 업무는 시설팀에서 담당한다.

제5조(실험담당교수) ①실험실 담당교수 및 소속부서장(이하 “실험담당교수”라 한다)은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발생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실험담당교수는 소관 실험실내에서 최소의 약품만을 구입 사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③실험담당교수는 소속 구성원이 졸업, 퇴직, 휴학 등의 사유로 청산보고서를 작성 시 해당 당사자가 사용하던 유해물질에 대한 인수인계, 폐기처분 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.

④실험담당교수는 해당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처음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취급 및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) ①본원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를 둔다.

②안전관리자는 실험과 연구에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항,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무단방류·투기행위 등을 감시·감독하고 폐기물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위법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유해화학물질 안전담당자) ①실험담당교수는 소속 직원 또는 학생을 유해화학물질 안전담당자로 임명하고 이를 안전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유해물질 안전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폐기물의 적정 수거,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소관업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유해화학물질 취급자)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본인의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안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.

②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의 양만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.

③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취급하여야 하며, 해당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)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실험폐기물을 성상별로 성실히 분리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기물은 매주 목요일 오후(13:00 - 18:00)에 폐기물저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. 단, 감염성폐기물은 생물과학과에서 따로이 수집보관한다

②수집 보관된 폐기물은 안전관리자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.

③실험실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안전점검)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자, 안전담당자, 안전관리자는 별표 1의 화학물질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) 안전관리자는 실험담당교수, 안전담당자,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유해화학물질 검수) ①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과안전위원회 안전간사(이하“안전간사”라 한다)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②안전간사는 검수현황을 검수대장에 기록유지하며, 매월 4일에 전 월의 검수현황을 안전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